

의안번호	2200940
의 퇴 인	임이자 의원
회 답 일	2024. 6. 27.
추 계 번호	24B118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2(저공해 운행지역의 지정 등)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함(제1항)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9조의2(저공해 운행지역의 지정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29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환경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지원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할 수 없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과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있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무공해차 보급사업,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매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표] 개정안 관련 환경부 현행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 개요	2024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대기환경실태를 파악하여 대기환경개선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및 대국민 대기질 정보제공	498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무공해차 충전인프라(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원하여 무공해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제고	7,344
무공해차 보급사업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여 수송부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23,193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매지원 사업	어린이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비용을 보조하여 경유차 조기 퇴출 유도 및 어린이 건강권 보호	32.5

자료: 환경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